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4261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1.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5285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6.경 ‘C’이라는 상호로 수입물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D’ 살균탈취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및 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분무기 각 5,000개를 매매대금 합계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7.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위 계약금의 절반인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2020. 2. 25.자 내용증명우편과 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2020. 5. 20.자 내용증명우편(이하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각 그 작성일에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인증된 제품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또는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인증된 제품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여 원고가 의약외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사기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측에 이 사건 제품 포장사진 및 제품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위 사진 및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의 용도가 생활화학제품인 살균탈취제라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어디에도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이라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품 홈페이지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사람 피부에 무해하고, 손세정제로도 가능)이다. 강력한 살균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손세정제(이른바 핸드워시, 손을 씻는 용도의 물비누)와 손소독제(질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에 있는 병원균 등을 죽이는 용도의 제품)는 구별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문구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약외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1)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 사건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2019. 11. 7. E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2)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물품공급 준비를 마친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거래처에서 의약외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